

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대법원은 2026. 1.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5. 나. 2)].

이하에서는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가맹점사업자들인 원고들(이하 “**원고들**”)은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이하 “**피고**”)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가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본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들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최초 가맹비와 가맹계약 존속 중 지급하는 매월 고정수수료, 광고비 등을 가맹비로 별도 지급해 왔습니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제1심은, 가맹사업법령에서 여러 지급형태의 가맹금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맹본부가 당연히 해당 가맹금을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나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i)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 ii) 물품대금 납부 전 송부되는 피고의 인보이스에 차액가맹금을 인식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없었던 점

- iii) 2019. 1. 1.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에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 등이 정보공개서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아, 그 이전까지 원고들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iv) 일부 원고가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

원심 역시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i)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 ii)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가맹계약의 일부로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iii) 거래 대상과 가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가맹사업 구조상 원·부재료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자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는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결정 참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교섭력의 차이를 전제로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기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3. 시사점

본건 판결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로서는 대상 원·부재료의 범위,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 등을 가맹계약서 또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명시하여 가맹계약 및 운영 체계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인 가맹본부로서는, 본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차액가맹금의 존재, 규모 및 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어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차액가맹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미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건 판결을 계기로,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행위 또는 필수품목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집행이 강화되거나, 본건 판결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될 가능성 있으므로, 관련 법 집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 Areas

공정거래

Contact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yj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